

광명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

제정 2025. 12. 19 조례 제3346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관광진흥법」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광명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“무장애관광”이란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·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말한다.
- “관광취약계층”이란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- “관광약자”란 관광취약계층, 장애, 고령, 임신, 영유아 동반자 등으로 인해 관광 활동을 위한 이동, 시설 이용, 정보 접근 등의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광명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무장애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광명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무장애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장애관광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-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및 목표
- 무장애관광을 위한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
- 관광약자 관광 활동 지원방안

4.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
5. 무장애관광 관련 사회적 인식 제고
6.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의 관광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조성 사업) ①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
2.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 활동 지원
3. 무장애관광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
4. 무장애관광 정보 제공 및 홍보
5. 무장애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
6.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이동 편의를 위한 이동 수단 지원
7.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인식 확대 교육
8.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장애관광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명도시공사, 법인·단체 등에게 「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, 다른 지방자치단체, 관광 관련 전문기관, 민간단체,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8조(재정지원)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「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